

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388
----------	------

2023년 12월 22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10월 16일 김영옥 의원(찬성 10명)
2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3. 상정일자 : 제321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3년 12월 19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김영옥 의원)

1. 제안이유

-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.59명에 그치는 등 심화되는 저출생 상황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, 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, 조례마다 관련 용어 정의가 상이하고 다른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가 불분명하여 혼선이 초래될 수 있음.
- 이에 “다자녀 가족”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, 관련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

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다자녀 가족”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(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)로 정의함 (안 제2조).
-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(안 제2조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- 입법예고 (2023.10.26.~10.30.) 결과 : 의견없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“다자녀 가족” 용어 정비를 통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다자녀 가족 지원 관련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함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다자녀 가족 정의규정 변경 (안 제2조)

- 안 제2조는 다자녀 가족 정의 규정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 중에서 자녀 중 한 명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다자녀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다자녀 가족”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<u>가족</u> 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<u>가족(다만 자녀 중 한 명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)</u> 을 ----.

- 안 제2조는 ‘다자녀 가족’ 정의 규정에 자녀 연령 기준을 포함하여 동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자녀 가족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으로써 타당하다고 보여짐.

□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2조의2 신설)

- 안 제2조의2는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, 이 조례를 따른다고 명시하기 위함임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

-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바, 개별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춰 조례의 지원 대상과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하는 가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자녀 연령에 대한 기준은 없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다자녀 가족 용어 정비를 통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으로써 입법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.
- 또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영옥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8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발 의 자: 김영옥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영철, 남창진,
박성연, 서상열, 신동원,
유만희, 이성배, 이종배,
최유희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.59명에 그치는 등 심화되는 저출생 상황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, 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, 조례마다 관련 용어 정의가 상이하고 다른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가 불분명하여 혼선이 초래될 수 있음.
- 이에 “다자녀 가족”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, 관련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다자녀 가족”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(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)로 정의함 (안 제2조).
- 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(안 제2조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가족을”을 “가족(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)을”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다자녀 가족"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<u>가족</u>을 말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<u>가족</u> (<u>다만 자녀 중 한 명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</u>)을 ----..</p> <p><u>제2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</u>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

문서번호

2023101600000034

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김영옥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손제승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6.

회신일 : 2023.10.19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(정의)의 가족을 가족(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)으로 변경하고, 제2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를 신설한 안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손제승

☎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